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무원 보수를 고려한 운행제한단속원 보수 책정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6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8464)	1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무원 보수를 고려한 운행제한단속원 보수 책정 (안 제77조제8항 신설)	3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846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무원 보수를 고려한 운행제한단속원 보수 책정

(안 제77조제8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함.

개정안은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책정 시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⑦ (생략) <u><신설></u> ⑧ (생략)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는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⑨ (현행 제8항과 같음)</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운행제한단속원은 현행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1)에 따라 운행제한 단속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민자도로관리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음.

【 운행제한단속원 직무 유형 】

	
(이동단속) 혐의차량 유도	(이동단속) 운행제한 단속
	
(고정단속) 단속시설	(고정단속) 단속 결과 등

※ 자료: 국토교통부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는 소속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보수계약, 임금협약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음. 국토교통부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공무원 근로자로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²⁾(국토교통부훈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건비에 대한 정부 예산 심사를 거쳐 보수 수준이 확정됨.³⁾

한편, 소속기관과 관리도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각 기관의 운행제한단속원과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현행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서는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로관리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동일하게 “단속원”으로 정의하며 단속원의 근무요령과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⁴⁾

2) 국도관리원이란 공무원인 운행제한단속원과 도로보수원을 포함하는 개념임.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도관리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제25조(봉급 및 수당) ① 채용권자 및 복무관리자는 국도관리원의 봉급 및 수당은 「경상적사업비 집행지침」 등 매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도관리원이 제13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

④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보수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복무관리자가 정한 날에 지급한다.

⑤ 국도관리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 등

3) 2025년 예산 기준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행제한단속원 인건비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과적단속운영(1732-303) 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4)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중 관련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은 소속 기관별로 보수 수준 편차가 있으며, 특히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 간 비교 시 월평균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인 운행제한단속원의 연봉이 4,460만원, 공무원은 6,380만원으로 공무원이 43.4% 높은 수준임.

【 운행제한단속원 보수 및 인원 현황(2024년 기준) 】

(단위 : 백만원, 시간, 명)

구분	국토교통부 (공무원)	국토교통부 (공무직)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경기도 (공무직)	민자고속도로 A*
평균연봉	63.8	44.6	40.8	50	44
월평균 근로시간	209	190	209	176	209
인원규모	25	585	3,188	18	122
비고			요금수납 등 병행		요금수납 등 병행

* 국토교통부는 각 민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명은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중 운행제한단속원 인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를 제시함

※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수준을 적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취지라 할 수 있음. 참고로 중요 시설 등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⁵⁾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청고시로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을 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운행제한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공무원인 운행제한단속원과 달리 공무원인 인사 이동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며 자격요건, 선발기준·절차, 신분 등에 따른 책임 등에 차이가 있어 공무원의 보수를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산정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⁶⁾⁷⁾

둘째,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라 운행제한단속원과 동일하게 “국도관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6) 운행제한단속원과 공무원간 상세 비교는 【참고자료 2】 참조

7) 참고로, 대법원은 국도관리원에게 그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국도관리원과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다만, 이는 다수의견(7인)에 따른 것으로, 상기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적 행위로서 국가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5인)도 있었음.(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리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보수원을 포함하여, 다른 공무원 근로자들과 운행제한단속원 간 보수 결정체계가 상이해지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직무상 권한, 책임, 신분 관련 사항이 공무원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특수성⁸⁾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행제한단속원의 신분, 업무, 권한·책임 등의 특성이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운행제한단속원의 소속기관별로 직무 내용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보수 결정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운행제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지방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운행제한단속원과 달리, 한국도로공사

8)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서비스 및 민자도로사업자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은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 외에 영업소 관리, 통행료 징수 업무 등을 함께 수행 중임.

요컨대, 운행제한단속원은 소속(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사업자), 신분(공무원, 비공무원), 세부 직무(운행제한 외 업무 여부)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은 단일한 보수결정 체계 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09290호)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2023. 6. 13.)된 바 있음. 이 회의에서 공무원직과 공무원의 보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환경미화 등 타 직종에 대한 전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임기만료폐기됨.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운행제한단속원은 공무직 근로자로서 당해 직종 근로자의 보수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운행제한 업무만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과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자격요건, 선발기준·절차, 권한·책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관련 제방여건에 대한 개별·구체적 고려 없이 유사업무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보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기획재정부

공무직 성격상 개별 법령을 통한 보수 획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보수와 직접 비교는 부적절함. 또한, 운행제한단속원만의 보수를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부재하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법무부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만 법령에 규정한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타 직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개정안은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업무’ 및 ‘고려한다’의 의미가 그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4)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운행제한단속 업무는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이 수행하고 있어 다른 도로관리청 소속 운행제한단속원과 직무 범위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요금수납원의 보수를 운행제한단속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운행제한단속 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서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도로관리원"이란 법 제5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9. "운행제한단속원"이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현장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업무에 활용하고자 도로관리청이 고용·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단속원**"이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제4조(임무) ⑤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단속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제한
2. 검문소 진출입 차량의 통행안전 확보
3. 검문소 및 단속장비(차량, 축종기 등)의 운영
4. 제복 및 안전장비 착용
5. 근무일지, 적발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
6.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운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단속원**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19조(근무요령) ① **단속원**은 검문소의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단속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 일지(검문소의 단속장비 운용 현황,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현황,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관리 현황 등이 기록된 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차량 제원 측정 결과, 위반 내역, 후속 조치 내역, 위반자 정보, 신고 내역 등이 기록된 서식)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단속원**은 소장 또는 반장이 지정한 근무위치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단속원**은 근무위치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단속원**은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 근무일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 등 관련 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는 지정받은 위치에서 정시를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⑥ **단속원**은 제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급받은 별표 4의 제복(근무복, 조끼 또는 잠바, 근무모, 단화, 견장, 이름표, 도로관리원증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증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고, 반장은 별표 4의 표지장을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단속원**은 상시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휴대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야광밴드 등의 안전장비를, 우천시에는 우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참고 2

운행제한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 · 공무원직 비교

구 분	공무원	단속원(무기계약직)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도로법 제77조제4항
소 속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채용기준 (근거법령)	○ 시험성적 ·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 등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 ○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의 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사람 (「국토관리원 관리규정」 제6조)
주요직무 (근거법령)	○ 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 차량의 단속 · 적발 ○ 과적차량 단속요원 관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 화물차 유도·정차, 차량제원 및 적재량 측정, 운행제한 위반시 회차, 운행제한 관련 자료수집·분석, 통계관리 등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근무시간 평균	209시간/월	190시간/월
보수체계 (근거법령)	기본급+수당 (「공무원보수규정」)	기본급+수당 (「국토관리원 관리규정」 제25조) *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